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4.

발 의 자 : 장철민 · 김교홍 · 이재관
정진욱 · 문금주 · 박용갑
임미애 · 이인영 · 부승찬
이춘석 · 황운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 및 지도 관리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통합사례관리의 자격·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나 처우, 복리후생 및 인권 침해 예방,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급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,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의2).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자격·업무 등”을 “자격·업무, 처우·급여 및 복리후생 등”으로, “사항은”을 “사항,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방법 및 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2조의2(통합사례관리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2조의2(통합사례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
<u>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·업무 등</u>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<u>사항은</u>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<u>⑤ -----</u> <u>-----자격·업무, 처우·급여 및 복리후생 등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사항,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방법 및 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-----</u> <u>-----.</u>